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996. 4. 19

기획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제출일자 : 1996년 4월 9일

회부일자 : 1996년 4월 9일

다. 상정일자 : 제1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('96. 4. 19) 상정

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관 흥 일 성)

가. 제안이유

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정원의 승인에 따라 관련 정원을 기관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니. 주요골자

○ 직속기관(지방공무원 교육원) : 정원 감축 1명(5급)

○ 본청 : 정원 증원 1명(4급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김재평)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증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이는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정원의 승인에 따라 자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골자로는

직속기관인 지방공무원 교육원 정원 1명(5급)을 감축하여 직속기관 정원의 총수를 982명에서 981명으로 하고 본청에 1명(4급)을 증원하여 본청 정원의 총수를 940명에서 941명으로 기관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참석 6명, 찬성 6명)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10. 심사보고서 불임 서류

- 총청복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- 신·구조문 대비표